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가단53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9. 27.

판 결 선 고 2021. 10. 18.

주 문

1. 피고와 B(여, 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99,217,0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217,05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최석문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E]

F아파트 G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14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89.1648㎡

1층 509.821㎡

2층 내지 14층 각 473.78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6.25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D 대 39,470.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470.9분의 89.8437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B는 국세채납자이고(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피고는 B의 자(子)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B의 부동산 양도 행위

(1) B는 2015. 2. 3.경 I·J에게 제주도 K, L 각 부동산에 대한 보유지분 1/2을 22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2) B는 2015. 6. 1.경 M에게 제주도 N 전 331.6㎡을 381,1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B는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279,229,530원입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표1] B의 국세 체납액(2021. 2. 기준)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원)	체납액 (원)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계				190,016,830	279,229,530	
양도소득세	2015	2017. 1. 5.	2017. 3. 28.	190,016,830	279,229,530	2015. 3. 31. 2015. 7. 31.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B의 배우자인 망 O은 2020. 6. 12. 사망하였고, 망 O의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A(피고), P, Q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망 O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F아파트 G동 H호(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합니다.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참조)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2020.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속부동산).

[표2]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역

피상속인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협의분할	비 고
O	B	3/9	0	채납자
	A	2/9	1/1	피고
	P	2/9	0	
	Q	2/9	0	

3.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5. 5. 31., 2015. 7. 31.로써,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0. 6. 26.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가.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당시(2020. 6. 26.) B의 재산은 상속부동산의 3/9지분이 전부였습니다(갑 제6호증 채납자재산현황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표3] 2020. 6. 26. B의 재산상태

순번	항 목	금액 (원)	비고
적극재산			
1	이 사건 상속부동산	181,666,666 (545,000,000원 × 3/9)	상속부동산 (2020. 6. 시세)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 R시세 (2020. 6. 기준)
합 계		181,666,666	
소극재산			
1	이 사건 조세채무	273,529,070	갑 제9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2020. 6. 26. 기준)
2	(상속부동산) 근저당 채무	87,999,999 (264,000,000원 × 3/9)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 계		-361,529,069	
적극재산 - 소극재산		-179,862,403	채무초과

다. 사해의사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부산지방법국세청 채납추적과에서 B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20. 12. 10.경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열람한 이후 상속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등기가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원상회복 방법 - 가액배상 청구

가. 피고의 상속부동산 처분 행위와 상속채무 내역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직후인 2020. 7. 15.경 S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6.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속부동산).

피고가 S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는 망 O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9. 1. 25.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4,000,000원), 2020. 2. 13.자 대한민국 명의의 가압류(대전지방법원 2020카단50523 피보전권리 가액 83,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S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처분한 직후에 망 O의 상속채무가 변제되면서(갑 제7호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권상환액 조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239,348,844원, 가압류 피보전권리 가액 83,000,000원)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속부동산).

나. 가액배상액

(1)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게 피보전권리액을 한도로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3/9지분의 가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이므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상속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가액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S에게 62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620,000,000원에서 상속채무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39,348,844원 +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83,000,000원 = 322,348,844원)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표4] 가액배상액 산정내역 (단위 : 원)

①매매가액	②상속채무액	③상속부동산의 가액 (① - ②)	④공동담보가액 (상속지분 3/9)	⑤피보전채권	가액배상액 min(④, ⑤)
620,000,000	322,348,844 (239,348,844 + 83,000,000)	297,651,156	99,217,051	279,229,530	99,217,051

8.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